
입 법 정 보

2019-1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
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
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8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8
8.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
1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1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12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
1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3
15.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4
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무부).....	15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5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6
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2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7
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2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29.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0.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6
3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6
3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7

3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7
3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8
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9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9
39.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9
40.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30
4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33
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4
4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35
45.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5
4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민권익위원회).....	36
47.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9
4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0
4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0

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안 별표)

- 1)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면허를 30일 간 정지(현행 경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강화(안 별표 II 제1호나목 표)
- 2) 허가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허가를 30일 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신설(안 별표 II 제2호나목 표)

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8.
- 마감일자 : 2019. 8. 19.

○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동·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자격확인 명확화(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 1)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나.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안 제7조의4제2항제15호)

- 1) 조합주택의 동·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수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하도록 개선함.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제2항 신설)

-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8.

• 마감일자 : 2019. 8. 19.

-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안 제17조제1항제2호)

- 1)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제도 개선

- 1)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3호)

- 2)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신설)

- 3)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 4)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전매제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안 제58조의2 신설)

- 1)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내용, 담보 매입절차 방법, 사업종료시 권리관계 처분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1) 금융회사와 전담기관의 협약에 따라 매입하되 매입가격은 사업의 대상과 사업예산을 고려
- 2)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종료 이후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세부 운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나.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재원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 1) 전문기관은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은 사업운영 재원과 전문기관의 성과급으로 사용 가능
- 2)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다. 전담기관에 대한 감독, 전담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별도의 사업계정 설정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 1)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예 결산, 기구 조직, 전문기관의 선정, 그 밖에 사업관련 사항을 감독
- 2) 전문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 3)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정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7. 9.
- 마감일자 : 2019. 7. 2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그 외에 타 법률명과 기관명을 현행화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및 타 법률·기관명 현행화(안 제8조)

- 1) 연구목적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우선면허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타 기관명 등을 현행화함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11.
- 마감일자 : 2019. 8. 20.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86호, 2019. 10.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권으로 임대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향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 1) 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1/2 범위 내 감경·가중 요건을 구체화함.

나. 임대등록 요건 강화(안 제4조 및 제5조)

- 1)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하는 경우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인

잔금지급일 3개월 전부터 하고,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임대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서 1년 경과 후로 조정함.

다. 소득·자산 확인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명확화(안 제33조의5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라.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마련(안 제36조)

1)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

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인 매입임대사업 규모 명시(안 제38조)

1) 동일 임대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함.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11. • 마감일자 : 2019. 8. 20.

○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명시(안 제1조의2제3호)

1)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던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절차 보완(안 제14조의4, 제14조의11, 별표1, 별표2 등)

1)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단기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 2)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 선정 방법,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준주택(오피스텔) 실제 거주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19조)

- 1) 지자체장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차인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절차 마련 등(안 별지 제24호서식)

- 1) 국토교통부 등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11.
- 마감일자 : 2019. 8. 21.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개인정보취급 규정 필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50조의2)

- 1)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규정(안 제60조의6)

- 1)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작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영안전관리자 배치 예외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개인정보취급(안 제63조의2제9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별표 6)

1)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마. 과징금 제도 개선(안 별표1 개정)

1)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다목 2)에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를 추가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중지 기간에 1일 단위 부과 금액을 곱하여 규정
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별표 1의2 개정)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중 1등급 및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하고, 철도차량정비는 현장 실무경험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 중 학력점수의 배점을 낮추는 등 조정함.

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12.
- 마감일자 : 2019. 8. 21.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자와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짓평가서 재평가 대상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41조)

1)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 대상이나, 인 용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련 준용조문 추가(안 제49조)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 등은 환경영향평 가 관련 과징금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안 제64) 및 벌칙 신설(안 제74조)

1)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마련함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12.
- 마감일자 : 2019. 8. 21.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 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 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하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판단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1)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인정하거나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가 명백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중 미산입 기간 추가(안 제25조, 제50조, 제62조제2항)

1) 제3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안 제55조)

1)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로 함

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보완(안 제63조의2)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에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

마.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안 별표5)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의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로 변경함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12.

• 마감일자 : 2019. 8. 21.

○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서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7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별표 5 제2호에서 별표 5 제3호로 현행화

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정비(안 제30조)

1)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
가서등의 종류별 대행실적 건수,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
향평가 수탁 실적을 공고토록 함

다. 별지 제11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5 서식의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을 보완

29.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12.

• 마감일자 : 2019. 8. 21.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
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 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1조
제3항)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지도 점검 권한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
에게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부
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나.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2)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축물이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 1)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0.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12.
- 마감일자 : 2019. 8. 21.
-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CODMn)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생활환경기준의 유기물질 항목으로 총유기탄소(TOC)를 도입·운영('16.1)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배제방식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한 지역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부적정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분류식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7. 12.
- 마감일자 : 2019. 8. 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 16407호, 2019. 4. 30.)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시행령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속이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함

금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조문을 삭제(제7조제2항)

40.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7. 18.
- 마감일자 : 2019. 8. 27.

○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 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의 세부 운영방안을 신설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등록사항, 이동 및 변경신고 사항의 확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의 대리신청 (안 제2조)

-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정의가 불분명한 세대를 기준으로 등록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재외공관의 업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등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등록사항의 확인 (안 제2조의2)

-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실무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할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각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달리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여 실

질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둬으로써 등록에 있어서의 재외국민 편의를 도모함.

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전자적 작성·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 1) 모든 재외공관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는 모두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하게
등록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등록부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안 제5조)

- 1) 등록자의 교부신청과 대리인등의 교부신청을 구분하고, 등록자
는 “어디서나 민원” 또는 “민원우편” 제도를 통하여 국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신
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함.

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안 제6조)

-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내용에 관한 규정
의 부재로 서식에만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어 재외공관 사이에
간의 업무에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2) 재외국민등록부의 기록을 기초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작성하
도록 하면서 말소된 사항 등 선택적으로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
고, 등본의 발급기관 명의를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으
로 이원화하면서, 등록공관이 아닌 재외공관의 장도 외교부장관
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이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
부할 수 있도록 함.

바. 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안 제7조)

- 1) 변경 및 이동신고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명
시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확인에 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사.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의 구체화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1)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은 귀국신고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바,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2) 귀국신고는 외교부장관이 받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외공관에서 이를 미리 접수하여 이송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3) 아울러, 외교부장관은 반기별로 귀국신고 내용 및 등록자의 사망 여부, 출입국기록, 국적상실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대상자의 등록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신청 및 신고 방법의 다변화 (안 제2조제4항, 제5조제4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4항, 제10조)

-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를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대표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재외공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2) 신청 또는 신고의 성격, 국내외 우편제도 등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접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신청·신고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까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 등록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신설 (안 제11조)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등록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한 국내 연고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및 체류국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등록부의 정정 절차 신설 (안 제12조)

- 1) 현행 규정상 흠결되어 있던 등록부의 정정을 명문화하고, 정정하는 경우 정정내용과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공기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함.

4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7. 19. • 마감일자 : 2019. 8. 28.
- 자연휴양림에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점검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안 제21조의6 및 제38조)
 - 1)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마련(안 제30조)
 -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를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은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45.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7. 19. • 마감일자 : 2019. 8. 28.
-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규정(신설안 제7조의4)
 - 1) 군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회피·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재배정, 직무 대리자·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 1)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9조)

-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행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영리행위를 관리 운영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함.

바.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 1)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 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 1)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와 해당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12조)

- 1) 공직자는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됨.

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 1)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차.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카. 징계, 벌칙 및 과태료(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징계를 의무화함.
- 2)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적이익 또는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등은 위반행위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3)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7.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7. 19.
- 마감일자 : 2019. 8. 28.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안 제5조제3항 신설)

- 1)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나.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신설)

- 1)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 기관 중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